

제27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  
전문위원 정 우 숙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32
- 나. 제 출 자: 김현희 의원 외 6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4월 14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4월 20일

### 2. 제정이유

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이라는 조례의 목적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악취,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~제5조)
- 라.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악취방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나. 합 의: 녹색환경과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4. 14. ~ 4. 19.) 결과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취지

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,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 내용

1)[안 제1~2조] 목적 및 용어 정의

2)[안 제3~5조] 구청장·사업자·구민의 책무 규정

3)[안 제6조] 실태조사 시행에 대한 사항 규정

-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 및 업종별 배출 특성 등 실태조사

4)[안 제7조]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

-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
-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

5)[안 제8조]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항 규정

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여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,
-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제3조에서 제5조에 거쳐 구청장·사업자·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고, 제7조에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 등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
-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.

## □ 악취방지법

**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**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, 동물의 사육,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66조(의안의 발의)**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23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.